

# 개인축산업자의 법인전환 I



송재현 공인회계사/세무사  
대현회계법인

- 고려대학교 경영대학 경영학과 졸업
-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원 경영학과 졸업 및 석사 학위 취득
- 공인회계사, 세무사(1986년 취득)
- 안건회계법인 근무(1984년~1991년)
- 개인사무소 운영(1991년~2000년)
- 화인경영회계법인 송파지점 대표 (2000년~2002년)
- 대현회계법인 대표이사(2002년~현재)

개인사업체로 운영하던 농장의 규모가 커지게 되면 여러 가지 목적 때문에 법인으로 전환할 필요가 생긴다. 이에 축산업자의 법인전환에 관한 제반사항과 세무문제를 이번달과 다음달에 걸쳐 정리해 보기로 하겠다.

## 1. 법인전환의 목적

- 소득세의 절감을 위해
- 농장의 양도소득세 절세를 위해
- 적은 세금으로 농장을 증여, 상속하기 위해
- 신임도의 제고와 사업규모를 증대하기 위해
- 자금의 투자유치를 받기 위해
- 책임의 구분과 전문경영인 체제로 전환하기 위해

## 2. 법인사업체의 장점

- 대외적인 신임도의 상승(대출한도의 증가 등)
- 체계적인 경영으로 효율성의 증가(사업규모가 커짐)
- 절세효과(소득세, 재산세 등이 감소함)
- 세무관리효과(세무조사가 줄어들음)
- 자금조달의 용이성(투자유치, 지분양도, 공동사업이 쉬워짐)
- 법률적 책임의 단절(차입금의 상환, 손해배상 등 책임이 개인과의 단절됨)

## 3. 법인사업체의 단점

- 회계비용의 증가(세무대리인을 이용함)
- 사적인 자금사용의 제한(대표자 인건비로 지급함)
- 배당소득세의 과세(배당하지 않고 법인을 키움)

## 4. 법인의 종류

전환의 대상이 되는 법인은 크게 나누어 다음

〈표〉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의 혜택 및 차이점

내용	영농조합법인	농업회사법인
법인격의 성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조합으로 봄</li> <li>• 민법상 조합에 관한 규정 적용</li> <li>• 조합원은 지분율에 상관없이 동일하게 의결권을 가짐, 소유권은 지분율에 따라 가짐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상법상 법인과 같음</li> <li>• 상법상의 회사에 관한 규정 적용</li> <li>• 주식회사와 유사하게 지분율에 의해 의결권을 가짐, 소유권은 지분율에 따라 가짐</li> </ul>
조합원/주주의 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조합원이 5인 이상 있어야 함. 조합원은 모두 농업인이어야 함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주주 2명(또는 4인) 이상, 그중 농업인이 1명 이상 있어야 함</li> </ul>
지분율의 제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제한 없음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농업인의 지분율이 25% 이상 소유하여야 함</li> </ul>
설립절차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설립시 출자금을 납입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설립절차가 간편함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설립시 출자금을 은행에 예치하여야 하므로 다소 복잡함</li> </ul>
법인세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조합원 1인당 연간 1,200만원씩 소득에서 공제함</li> <li>※ 최저한세 적용대상 배제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최초로 이익이 발생하는 연도와 이후 3년간 소득세의 50%를 감면함</li> <li>※ 최저한세 적용대상</li> </ul>
배당소득세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배당소득의 5%만 분리과세함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배당소득의 14%를 분리과세함</li> </ul>
선택기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조합원이 공동경영하는 경우에 적합함</li> <li>• 사업규모가 적어서 소득이 많지 않을 경우 유리함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사장님의 단독 소유로 경영하는 경우에 적합함</li> <li>• 사업규모가 커서 이익이 많이 발생하는 경우에 유리함</li> </ul>

과 같으며, 목적에 따라 유리한 형태를 선택하면 된다.

- 상법상의 법인(4가지) : 주식회사, 유한회사, 합자회사, 합명회사
- 농업·농촌기본법상의 법인(2가지) : 영농조합법인, 농업회사법인

## 5. 농업법인의 개요

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은 모두 농민과 같이 취급되어 농민에 대해 제공되는 금융상, 정책상의 혜택 뿐만 아니라 세제상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데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혜택 및 차이점은 위의 표와 같다

## 6. 법인전환시 소득세가 줄어드는 효과

### ① 세율의 차이

개인은 소득금액이 8천만원 초과시 35%이나, 법

인은 1억원 초과시 25%의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소득세가 줄어든다.

### ② 대표자의 인건비 인정

개인사업자에 대하여는 근로소득을 인정하지 않지만 법인은 대표자의 인건비를 비용으로 인정하고 이를 근로소득으로 과세하기 때문에 개인 때의 소득금액이 근로소득과 법인의 소득으로 분리되어 세액의 산출이 적게 된다.

### ③ 이러한 이유로 소득이 1억원인 경우 단순히 법인으로 전환하면, 소득세가 2,169만원에서 약 1,292만원으로 절반수준으로 감소한다(4인 가족 기준, 법인에서 4천만원 급여처리 가정).

■ 문의 : (02)552-6100 대한회계법인

- '개인축산업자의 법인전환Ⅱ'는 다음호에 계속...